

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(제7조의2 관련)

공무원의 종류	적 용 대 상
일반직공무원	6급 이하
외무공무원	4등급 이하
별정직공무원	6급상당 이하
경찰공무원	경감 이하
소방공무원	소방경 이하
연구직·지도직공무원	연구사·지도사
교육공무원	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(장학관·교육연구관·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)
군인	소장 이하(병은 제외한다)
군무원	6급 이하
국가정보원 직원	1급 이하 및 전문관
경호공무원	1급 이하
전문경력관, 전문군무경력관	나군 및 다군
우정직군	전체

비고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.